

한국지도학회 논문상 심사 및 시상 규정

2017년 6월 3일 제정
2020년 12월 12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도학 분야의 후속세대 연구자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한국지도학회 논문상(이하 '논문상')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논문) 논문상은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대학원생이 주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 기간) 논문상의 심사 대상 논문은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한국지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제4조(심사대상자) 논문의 심사대상자는 한국지도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심사기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논문상을 이미 수상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논문상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국지도학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명하고, 학술부장, 편집부차장, 총무부차장, 학술부차장 각 1인이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접수된 논문의 심사 원칙 및 규정
2. 관련 규정의 개폐
3. 논문 심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이 대상 논문을 지정하여 각 위원에게 공지한다.

② 심사위원은 대상 논문에 대해 절대 평가 방식으로 심사한다.

③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한 후, 논문별로 합산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④ 심사 결과 최고 순위의 대상 논문을 논문상 수상 논문으로 확정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한국지도학회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9조(심사 시기) 심사는 11월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시상) 논문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